의 안 번 호

1673

[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]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1. 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6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8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문화관광과장 김계화)

가. 제안이유

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문화 관광도시 활성화와 캐릭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시책과 사업(안 제3조)
- O 상표의 관리 및 홍보, 사용신청 및 승인, 사용료, 사용계약,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(안 제4조 ~ 안 제8조)
- 상품 제작 및 판매, 특별할인판매(안 제9조 ~ 안 제10조)
- 홍보 지원(안 제11조)
- 홍보단의 구성(안 제12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제4항
- 「상표법」제97조(통상사용권), 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
- O 「상표법 시행규칙」제28조(상표등록출원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,
- O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으며, 구정의 효율적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[수정안]

- 수정이유
 - 제1조 (목적) 외래어로 표기된 문구를 쉬운 한글로 정비
 - 제10조 (특별할인 판매) 구의회 확대
-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 시 중구 대표 브랜드인 울산큰 애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울산큰애기 <u>브랜드</u>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(삭제) <u>상표</u>
제10조 (특별할인 판매) ① (생략)	제10조 (특별할인 판매) ① (현행 과 같음)
1. 구 본청, 소속기관 및 하부행 정기관과 울산광역시 <u>중구의</u> <u>회에서</u> 방문자에게 기념품으 로 제공하는 경우	1
2.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울산큰애기 홍보 및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	2. <u>구 및 구의회</u>

근 거 법 규

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

-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〈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〉
- 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- 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-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- 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5.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상표법

제97조(통상사용권)

-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(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)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.
-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(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 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)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제2항 및 제 95조 제2항·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

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상표법 시행규칙

제28조(상표등록출원)

① 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"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.